

내가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 학운위에 올리기 전에 준비할 두 가지

작성일: 2026년 7월 27일 대상: 직접 만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쓰려는 선생님 전제: 개발을 몰라도 따라올 수 있게 썼습니다. 용어는 나올 때마다 풀어 씁니다.

세 줄 요약

-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교과 학습콘텐츠를 담은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학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무료든 유료든,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든 상관없습니다.
- 학운위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 곧 에듀집에 올라가 있는 서류 두 가지**입니다. 필수기준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 그래서 **에듀집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이 두 서류는 어차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에듀집에 등록하면 학교 실무자 입장에서 **별도 검증을 하지 않고 에듀집 등록 기준을 인용할 수 있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1. 왜 학운위를 거쳐야 하나

2025년 8월 14일에 「초·중등교육법」에 제29조의2(교육 자료)가 새로 생겼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둘,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학운위가 심의할 때 보는 것이 바로 그 "교육부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자료 선정이 학운위 심의 사항이라는 근거는 같은 법 제32조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4호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으로 남은 것은 제1호(학교헌장·학칙)뿐이고, 교육 자료 선정인 제4호는 국·공·사립 모두 **심의 사항**입니다.

2. 내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가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2025년 12월)이 대상 범위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조건	내용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하는 소프트웨어
②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 하며, 그 콘텐츠를 만든 곳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

②는 좀 헷갈리는데, 가이드라인의 설명이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부터 교과 성취기준에 맞춰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안에 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곳의 콘텐츠를 불러오기만 하거나, 그 소프트웨어로 교사가 새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라면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도 명시돼 있습니다.

-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하려고 쓰는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 방과후 수업이나 공공기관의 일시적 평가 등 **정규 교과 밖**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 학교 홈페이지(정규 교과용이 아니므로)

반대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넓습니다. 공공기관이 만든 것(AI 펍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도, 시도교육청이 만든 플랫폼도, 해외 기업 제품도 전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는 단순 저작도구로 쓰지만 다른 교사는 학생이 직접 제작하게 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생기는" 경우도 대상에 넣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무료라서, 내가 만들어서, 우리 반에서만 써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은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느냐, 교과 학습콘텐츠를 담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3. 학운위가 보는 기준은 결국 이 9개 항목

교육부가 정한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중 **필수기준은 전부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해당없음"인 것은 괜찮습니다.)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만 뽑은 5개 영역, 9개 항목입니다.

영역	세부 항목	법적 근거
1. 최소처리 원칙 준수	1-1.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처리 원칙), 제16조(수집 제한)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제15조(수집·이용), 제30조제1항제1호
	1-3.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제21조(파기), 제30조제1항제2호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2-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제29조(안전조치의무)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3-1. 이용자가 언제든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제35조·제36조·제37조, 제30조제1항제5호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1.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제31조(보호책임자 지정), 제30조제1항제6호
	5-2.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제17조(제3자 제공), 제30조제1항제3호
	5-3. 위·수탁관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제26조(업무위탁), 제30조제1항제4호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9개 항목의 증빙란에 적으라고 예시로 박혀 있는 것이 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입니다.** 즉 이 심사는 실제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썼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중요합니다.

4. 준비할 서류 두 가지

서류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서식 2]입니다. 한 장짜리 문서이고, 구성은 이렇습니다.

- **제품/서비스 개요:** 제품명, 만든 사람(회사나 기관이면 그 이름, 개인이면 본인 이름), 접속경로(웹 주소 또는 앱 이름), 주요 내용과 기능·특장점
- **개인정보보호 기준 충족여부:** 위 9개 항목마다 충족·미충족·해당없음 중 하나에 체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증빙을 적는 칸**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방법:** 방침을 볼 수 있는 주소
- **작성일과 문의처**

양식 이름에 '공급자용'이 붙어 있지만 회사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스스로 점검해 적는 자가점검표이고, 작성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작성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만든 사람 칸에 본인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은 1페이지 분량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2. 개인정보처리방침

체크리스트의 9개 항목이 모두 "방침 몇 조에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방침이 없으면 체크리스트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쪽이 본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조항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등록까지 할 경우) 서류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류가 아니라, **에듀집에 등록하는 사람 본인의 개인정보를 쓰겠다는 동의서**입니다. 에듀집이 제공하는 양식이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 수집 항목: 소속, 직급, 성명, 전화, 이메일
- 목적: 학교의 소프트웨어 선정과 학운위 심의를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문의정보 제공
- 보유 기간: 2년
- 제3자 제공: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개 시·도교육청에 묶음자료 형태로 제공

학운위 서류로는 필요 없고, 에듀집에 올릴 때만 함께 냅니다.

5.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방침에 담을 내용은 법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3의3.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 구성표: 이렇게 짜면 9개 항목이 한 번에 채워집니다

방침 조항	여기에 적을 내용	체크리스트 대응	법적 근거
제1조 총칙·데이터 처리 구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특히 내가 서버로 가져가는 정보와 사용자 기기에만 남는 정보 를 갈라서 밝힙니다.	전체 전제	제30조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엇을 모으는지 표로. 항목, 수집 방법까지.	1-1, 1-3	제15조, 제16조, 제30조1항
제3조 처리 목적	각 항목을 왜 모으는지. 목적이 바뀌면 다시 동의받는다 문장 포함.	1-1, 1-2	제15조, 제30조1항1호
제4조 보유 및 이용 기간	항목별로 얼마나 갖고 있다가 언제 지우는지, 파기 방법까지.	1-3	제21조, 제30조1항2호·3호의2
제5조 제3자 제공	넘기는 곳이 있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 합니다. 비워 두지 마세요.	5-2	제17조, 제30조1항3호
제6조 처리 위탁·국외 이전	남의 서비스를 쓰면 전부 적습니다. 서버 호스팅, 외부 AI, 인증, 배포까지. 해외 서버면 국외 이전도 밝힙니다.	5-3	제26조, 제28조의8, 제30조1항4호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어디로 요청하면 되는지, 며칠 안에 처리하는지.	3-1	제35~37조, 제30조1항5호
제8조 만 14세 미만 아동	아래 별도 설명 참조. 내 소프트웨어가 아동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따라 내용이 갈립니다.	4-1	제22조의2
제9조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나눠서. 암호화, 접근 통제, 통신 암호화 등.	2-1	제29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소속, 연락처. 분쟁조정위원회·침해신고센터 안내도 함께.	5-1	제31조, 제30조1항6호
제11조 변경 고지	방침이 바뀌면 언제 어디에 알리는지.	공통	제30조2항

방침은 반드시 "공개"돼 있어야 합니다

법 제30조제2항이 공개를 요구하고, 체크리스트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방법"을 적으라고 합니다. 앱 안 팝업으로만 띄우면 학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사이트주소/privacy** 같은 고정 주소 하나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 만 14세 미만 항목(4-1)은 어떻게 채우나

아홉 항목 중 판단이 갈리는 곳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동 이용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는 우회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니 이 항목은 내 소프트웨어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부터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는 내용을 방침에 적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소프트웨어가	방침 제8조에 적을 내용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학생이 직접 가입·사용하거나, 학생 정보가 내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실제로 받는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를 그대로 적습니다. 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 동의서, 보호자 확인 절차 등 실제로 쓰는 방법을 씁니다. 아동에게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쓴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교사로 한정되고, 학생 정보가 교사 기기에만 남는 경우 등)	그 사실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누가 이용자인지, 학생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디로 가는 지 않는지, 외부로 내보낼 때 식별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씁니다. 체크리스트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동작과 방침이 일치해야 합니다. 방침에 적은 것과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다르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애매하면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첨부한 템플릿에는 두 경우의 문안을 모두 넣어 두었으니 해당하는 쪽을 골라 고쳐 쓰시면 됩니다.

7. 에듀집에 올리는 법 (교사 개인은 구글폼입니다)

에듀집(edzip.kr)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입니다. 2026년 1월 말에 "필수기준 점검결과" 게시판이 생겼고, 여기 올라온 체크리스트를 학교가 내려받아 학운위 안건으로 씁니다.

에듀집 화면에는 회사가 쓰는 '기업 관리' 회원가입 입구만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교사 개인은 그 경로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구글폼으로 제출합니다. 이 경로는 에듀집 「기업 회원가입 및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2026년 1월 28일자) 자료 5쪽에만 적혀 있어 사이트만 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교사 등 개인이 만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체크리스트 등록을 희망하시는 경우 입력 양식 (<https://forms.gle/aCa4mjvgtmovEf1eA>)을 통해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 <https://forms.gle/aCa4mjvgtmovEf1eA> (구글 계정 로그인 필요, 2026년 7월 27일 기준 작동 확인)
- 문의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3-714-0357, 053-714-0308

낼 것은 앞에서 만든 체크리스트와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리고 본인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파일 이름은 체크리스트(제품명_만든이)_작성일자.pdf 형식을 권장합니다.

등록되면 목록의 구분란에 "기타(교사 등 개인)"으로 표시됩니다. 실제로 이 구분으로 등록되어 확인완료 받은 교사 개인 제작 소프트웨어들이 여럿 있습니다.

등록 후 상태 표시

상태	뜻
확인완료	전 항목을 충족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등록한 상태
확인중	체크리스트와 증빙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중
보완요청	체크리스트나 증빙에 보완이 필요해 요청한 상태. 보완하면 확인완료로 바뀝니다
미충족	필수기준 중 미충족 항목이 있는 상태

찾는 소프트웨어가 게시판에 없을 때는 '미등록 자료 요청' 게시판(<https://edzip.kr/unregistered-material-request>)으로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등록은 선택인데, 왜 하는 편이 나은가

에듀집 공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에듀집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자료를 탐색하고 에듀테크 사용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에듀집에 등록된 제품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어, 제품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Q9도 에듀집에 없으면 "만든 곳에 직접 요청하거나 제품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등록하지 않아도 학운위 통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록하는 편이 나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 1. 학교 실무자가 별도 검증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에듀집에서 내려받아 등록 기준을 그대로 안건에 붙이면 끝입니다. 등록이 없으면 만든 사람에게 따로 연락해 자료를 받고, 그 자료가 맞는지 학교가 직접 따져야 합니다. 여러 학교에 퍼질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 2. 어차피 두 서류는 만들어야 합니다.** 학운위 심의를 받으려면 학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대상이 체크리스트와 처리방침입니다. 등록을 안 해도 서류 작성 부담은 똑같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올리지만 않는 셈입니다.
- 3. 제3자가 확인해 준 상태가 됩니다.** 확인완료 표시는 체크리스트와 증빙이 서로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심의 자리에서 "본인이 그렇다고 한 것"과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4. 시·도교육청에 묶음자료로 전달됩니다.** 등록된 체크리스트는 ZIP 묶음으로 시·도교육청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류 준비는 사실상 필수, 등록은 선택이지만 학교 실무자가 별도 검증 없이 에듀집 기준을 인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9. 준비 순서

- [] **1단계.** 내 소프트웨어가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나? 교과 학습콘텐츠를 담았나?)
- [] **2단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씁니다. 위 조항 구성표대로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채웁니다. 없는 항목은 비우지 말고 "해당 없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 [] **3단계.** 방침을 공개된 주소에 올립니다. ([사이트주소/privacy](#) 형태 권장)
- [] **4단계.** 체크리스트 양식을 내려받아 9개 항목에 체크하고, 증빙란에 방금 쓴 방침의 조 번호를 적습니다. 1페이지로 맞춥니다.
- [] **5단계.** 학교에 낼 준비가 끝났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체크리스트와 방침 주소를 전달합니다.
- [] **6단계.**(선택) 에듀집에 등록합니다. 교사 개인은 구글폼으로 제출하고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 **7단계.** 학교장이 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 학운위가 심의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학교장이 최종 선정합니다.

학교 쪽 절차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선정 절차는 4단계입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의견수렴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물품구매위원회 등으로 교원 의견을 모아 쓸 소프트웨어를 정합니다
2단계 기준 충족여부 확인	학운위 상정 전에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만든 쪽에 체크리스트와 증빙을 요청합니다
3단계 안건 상정 및 심의	학교장이 충족 여부와 선정 이유를 담은 안건을 올리고 학운위가 심의합니다
4단계 확정	학교장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선정합니다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하나,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는 학운위 위원이라도 그 소프트웨어 선정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내가 학운위원으로서 심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둘, 학기 중에 새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으면 그때도 학운위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시기를 놓쳤으면 다음 심의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개수가 많을 때는 가이드라인 [서식 3]의 간소화 양식으로 **제품명과 기준 충족 여부를 목록으로 나열해 한 번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10. 살핌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정답이 아니라 **한 가지 사례**입니다. 살핌은 교사 두 명이 만든 데스크톱 앱이고, 2026년 5월 22일자로 "기타(교사 등 개인) / 홍창욱(Team DoRm)"으로 등록되어 확인완료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마다 구조가 다르니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맞춰 적으셔야 합니다.

막혔던 지점	살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	만든이 칸에 "사업자 미등록 개인 교사 운영" 이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사업자가 없다고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전화번호가 없다	문의처에 "개인 교사 운영, 별도 대표 전화번호 없음, 이메일 응대" 라고 적고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증빙란에 무엇을 쓰나	전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조" 형식으로 채웠습니다. 방침의 조 번호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와 1대1로 맞도록 방침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항목(4-1)	살핌은 이용자가 교사 이고 학생 정보가 교사 PC에만 저장되는 구조라, 그 사실과 근거를 방침 제8조에 적었습니다. 외부 시로 보낼 때 이름을 자동으로 가리는 처리, 교사가 본문에 직접 쓴 실명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한계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학생이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라면 이 방식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탁(5-3)에 무엇을 적나	쓰는 외부 서비스 네 곳(Supabase, OpenRouter, Cloudflare, GitHub)을 모두 적고 각각 무엇을 맡겼는지,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저장되는지 밝혔습니다. 무료로 쓰는 서비스도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살핌이 실제로 낸 서류는 이 문서와 같은 폴더에 있습니다.

- `edzip/2026-05-19-privacy-policy.md` :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 `edzip/checklist-fill.html` : 실제 제출한 체크리스트 작성본

11.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	실제
무료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유·무료와 무관합니다. 개인정보와 학습콘텐츠가 기준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 그냥 쓰면 된다	만든 주체와 무관합니다. 공공기관이 만든 것도 대상입니다
에듀집에 등록해야만 쓸 수 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에듀집에 등록하면 심의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학교가 확인을 쉽게 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소프트랩 실증을 마쳤으면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증 결과는 판단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만 쓰니 괜찮다	정규 교과에서 쓰면 대상입니다. 방과후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 정보가 안 나가면 방침이 필요 없다	이용자(교사) 정보를 처리하면 방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한다	교사 개인용 제출 경로(구글폼)가 따로 있습니다

12. 법적 근거와 출처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제2항, 2026년 3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29조의2>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제32조>
- 「개인정보 보호법」(2025년 10월 2일 시행)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의2, 제26조, 제28조의8,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제37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지능정보기술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행정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2025년 12월 30일 조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m=020>
-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2025년 12월). 서식 1~4와 FAQ 14문항 수록
- 교육부 「2026학년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선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이드」(2026년 1월)
- 에듀집 「[공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체크리스트 등록 방법 안내」(2026년 5월 28일): <https://edzip.kr/main-notice/6a17f7ebb8641362b8b5cab>
- 에듀집 「회원가입 및 체크리스트 등록 안내」(2026년 1월 21일): <https://edzip.kr/main-notice/6a4de417a450e64b79a52ce9> (교사 개인 제출 경로는 첨부 자료 5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5년 8월)

확인 창구

- 에듀집 필수기준 점검결과 게시판: <https://edzip.kr/learning-sw>
- 미등록 자료 요청: <https://edzip.kr/unregistered-material-request>

13. 문의처

무엇을 물을 때	어디로
교사 개인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체크리스트 등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 053-714-0357, 053-714-0308
에듀집 사이트 이용	에듀집 운영센터 02-450-3550, support@edzip.net (평일 10:00~17:00, 점심 12:00~13:00)
선정기준·심의 등 정책, 우리 학교에 적용할 때의 판단	소관 시·도교육청 담당 부서, 교육부 민원 상담센터 02-6222-6060

14. 서류가 준비됐다면, 다음은 학운위 심의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학교에 낼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다음은 학교가 안건을 올리고 학운위가 심의하는 단계인데, 그 절차와 법적 근거는 도름스 공지 「내가 만든 교육용 SW, 어떻게 학교에 공식적으로 도입할까?」(<https://dorms.school/notice/edu-software>)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형별로 학운위 심의 외에 보안 절차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도 그 글에서 가려 볼 수 있습니다.